

한국 담배소송의 법의학적 전환: 의학감정서와 사법 시스템 의료화, 1999-2014*

김이재†, 이두갑‡

1. 서론

본 논문은 한국 담배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 전문가의 증언과 전문성이 사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의학적 지식의 불확실성이 법적 정의 구현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 초부터 법의학 관련 지식(medico-legal knowledge)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사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법의학 분야의 제도화, 전문가 증인의 도입, 그리고 과학 증거의 법적 지위 확립 과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 특히 최근의 법의학 지식에 관한 역사적 연구들은 법적 권위 구조 내에서 의학적 전문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학 지식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사법 과정의 의료화(medicalization)가 법적 정의 실현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5.47.3.461>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I5A5A2A01046522).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신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연구진행에 도움을 준 연구조원 김나영, 전체 논문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박성민 교수, 그리고 투고된 논문에 좋은 제안과 비판을 해주신 편집인과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yjk9096@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doogab@snu.ac.kr

¹ Katherine Watson, *Forensic Medicine in Western Society: A History* (London: Routledge, 2011).

본 논문은 1990년대 말 한국에서 공익소송으로 제기된 담배소송 사례를 법의학 지식의 도입과 확대라는 맥락에 위치시키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의학감정서와 이를 둘러싼 의학 및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논쟁을 분석할 것이다.

논문의 첫 부분에서는 담배소송을 법의학 지식의 확대와 그 법적 역할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의학적 전문성이 사법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고 제도화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1980년대 과학지식사회학의 영향을 받은 연구들은 과학 증거의 법적 지위가 법정과 의학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상 과정을 통해 확립되었음을 지적했다.² 특히 20세기 이후 범죄와 일탈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사법 시스템의 의료화가 가속화되어 오고 있으며, 해부 및 병리학, 정신의학적 증거, DNA 분석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사법 체계의 법의학적 전환은 의료 분야의 권위 확대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과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음을 지적한다.³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최근의 사법 과정의 법의학적 전환에 관한 연구들은 신체에 대한 의학 감정이나 성폭력 피해 판정 사례를 분석하며, 법과 의학의 상호작용이 신체에 대한 새로운 권력과 규율 방식을 낳았고, 때로는 범죄의 복잡한 현실을 의학적 증거로 환원시키면서, 법정에서 의학적 지식이 수행하는 역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⁴

법의학 지식의 법정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후 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 공익소송의 부상이라는 맥락에서 담배소송이 제기된 과정, 그

² Roger Smith, "Forensic Pathology, Scientific Expertise, and the Criminal Law," Roger Smith and Brian Wynne, eds., *Expert Evidence: Interpreting Science in the Law* (London: Routledge, 1989), 56-92; Joel P. Eigen, *Unconscious Crime: Mental Absenc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n Victorian Lond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³ Catherine Crawford and Michael Clark, eds., *Legal Medicine i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Christopher Hamlin, "Introduction," Ian Burney and Christopher Hamlin, eds., *Global Forensic Cultures: Making Fact and Justice in the Modern Er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9), 1-33.

⁴ Susan L. Burns, "Sexual Assault and the Evidential Body," *Osiris* 36 (2021), 163-80; Debra Blumenthal, "As [Healthy] Women Should: Enslaved Women, Medical Experts, and 'Hidden' Menstrual Orders in Late Medieval Mediterranean Slave Markets,"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8:4 (2023), 1558-1586.

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증언과 의학감정서의 도입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환경권, 건강권 등 시민의 권리 확대를 주장하는 공익소송이 증가했으며, 1999년에 제기된 담배소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적 계기를 마련해주었다.⁵ 의학감정서는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도입되어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적 지식(public knowledge)을 가시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정 증거의 명확성(clarity)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며 증거에 대한 의심(doubt) 또한 함께 가져왔다.⁶ 본 논문은 이에 담배소송이라는 법적 판단의 구조 속에서 의학적 감정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결정적 증거를 통해 확립하려는 법의학적 전환이 나타났고, 이에 의학적 증거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법정을 통해 어떻게 증폭되어 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담배소송과 유해 물질 소송에 대한 기존의 분석은, 과학적 증거가 사법 판단의 최종적 대리인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사회적·제도적 기대가 좌절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원고의 입증 부담과 증명 책임 전환의 한계, 그리고 과학적 불확실성을 강화한 피고의 증거 전략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등 제조물 소송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왔다.⁷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의학 감정을 법정에서 주어진 증거로 간주하지 않고, 의학 감

⁵ Claudia Junghyun Kim and Celeste L. Arrington, "Knowledge Production through Legal Mobilization: Environmental Activism against the U.S. Military Bases in East Asia," *Law & Society Review* 57:2 (2023), 162-288.

⁶ Simon Cole, "Forensic Culture as Epistemic Culture: The Sociology of Forensic Science,"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44:1 (2013), 36-46.

⁷ 김종영·김희윤, "'삼성백혈병'의 지식정치: 노동보건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 『한국사회학』 47:2 (2013), 267-318; 김하영·정용현·박영철, "마우스의 기도 내 점적을 통한 가습기살균제 CMIT/MIT와 사망 간의 원인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3:4 (2017), 247-256; 박진영·이두갑,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역학과 후기 근대적 인과", 『과학기술학연구』 15:2 (2015), 229-262; 박진영, "불확실성을 확정하기: 한국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참여와 불확실성의 법적 재생산", 『과학기술학연구』 21:1 (2021), 96-127. 미국 담배소송의 경우 이러한 의학지식과 법적 책임의 간극은 제조사의 불법행위와 조직적 과학적 사실의 은폐가 드러나면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Robert L. Rabin, "A Sociolegal History of the Tobacco Tort Litigation," *Stanford Law Review* 44:4 (1992), 853-878; Allen Brandt, *The Cigarette Century: The Rise, Fall, and Deadly Persistence of the Product That Defined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2007).

정을 둘러싼 대립과 논쟁이 어떠한 인식론적·법적 논증의 구조하에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맥락에서 재배치되고, 변환되고, 동원되는지를 추적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의학감정서가 담배 유해성에 관한 공적 지식을 가시화하는 한편,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 논증 구조 내에서 법적 판단을 안정화하기보다 오히려 법적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의학적 지식과 증거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정과 성찰을 통해, 지식이 단선적으로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실천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을 전제하여, 변호인과 감정인, 법관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개입과 감정서와 신문조서, 문서와 통계자료 등이 얹힌 형성된 관계적 산물로서 법의학적 불확실성이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⁸ 결론에서는 담배소송에서 드러난 법정 내 의학적 증거의 역할을 재검토하며, 의학과 법의 상호작용 및 합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법적 책임의 논의 구조에 통합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성찰적 기반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의학과 법의 교차: 의료화와 법적 정의의 역사

근대 이후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의료 전문가의 증언과 전문 지식은 사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1980년대 이후 의학과 법학의 교차 지점에서 제도화된 법의학 분야의 역사를 시작으로, 의학 지식의 도입 과정과 논쟁, 그리고 의학 전문가와 의학 감정이 사법 정의 구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⁸ 우선 법정에서 의학 증거와 전문가의 활용, 그리고 법의학의 제도화를 규명하려는 역사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의하면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은 주로 소송 절차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법률적 증명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과 체계를 발전시켰던 대륙법 체계에서 17세기 이후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대적 전문가 증인의 초기 형태는 독일과 이탈리아 대학 교수진이 법률 관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서면 의견이었으며, 18세기 말에 이르면 “전문가 증언(expert

⁸ Bruno Latour, *The Making of Law: An Ethnography of the Conseil D'etat* (Cambridge: Polity Press, 2010).

witness)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때 전문성의 개념은 법적 분쟁에 직접 관련 있는 개인의 실제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증언한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다 보편적으로 정의되고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었다.⁹

법정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사망과 질병에 관련된 여러 전문 지식을 제공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17세기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의 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법의학(legal 혹은 forensic medicine)이라는 분야가 체계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반면 보통법 체계였던 영국에서는 관습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전문가 증언과 자문이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었다.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경제적·법적 체계가 복잡해진 19세기를 지나며 대륙법, 보통법 체계 모두 전문가 증언 시스템과 도입되며 법의학 분야가 제도화되었다.¹⁰ 이에 의사들은 출생과 낙태, 영아 살해, 정신 이상, 독살과 같은 범죄 수사에서부터 사망과 유산, 생명보험에 관련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법적 판단에 필요한 전문적 의학 지식을 제공하였다.

보다 중요하게 사법 시스템의 의료화에 대한 연구들은, 법정에서 의학 전문가 증인들이 수행한 역할, 그들의 권위가 구성되고 도전받은 방식, 그리고 법정에서의 전문성 확립 방식에 주목하여 과학 증거가 사법 활동과 법적 정의의 실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다.¹¹ 우선 1980년대 과학지식사회학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과학사학자들은 의학자들이 지닌 전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법적 권위가 나타나기보다는, 법정과 의학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과학 증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갔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적, 문화적 권위를 동원한 협상 과정들이 존재함을 지적했다.¹² 또한 사법 시스템에서 법의학 지식의 역할을 분석한 캐서린 크로포드

⁹ Catherine Crawford, "Legalizing Medicine: Early Modern Legal Systems and the Growth of Medico-legal Knowledge," Crawford and Clark, eds., *Legal Medicine in History* (각주 3), 89-116.

¹⁰ Ibid, 89-116.

¹¹ Watson, *Forensic Medicine in Western Society* (각주 1); Hamlin, "Introduction" (각주 3).

¹² Michael Lynch, "The Discursive Production of Uncertainty: The OJ Simpson 'Dream Team' and the Sociology of Knowledge Machine," *Social Studies of Science* 28: 5-6 (1998), 829-868; Tal Golan, *Laws of Men and Laws of Nature: The History of Scientific Expert Testimony in England and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John Carson, "'Every Expression Is Watched': Mind, Medical Expertise and

(Catherine Crawford)는 의학 증거의 도입이 법정에 명확성뿐만 아니라 “의심(doubt)”을 함께 불러왔으며, 사법부는 이를 조율하기 위해 의학 증거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사형과 같은 극단적 형태의 선고 보다는 보다 인도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¹³ 일례로 조엘 아이겐(Joel Eigen)은 19세기 영국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의지 손상(lesion of the will)” 같은 부분적 정신 이상이라는 새로운 의학-심리학적 개념을 도입해, 법정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형량을 감경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신이상 변호가 법 집행과 형벌에 있어 인도주의적 재량권을 허용해 주기를 원했던 변호사, 판사들의 협상과 합의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¹⁴

2000년대 이후에는 의학 증거와 법의학 분석이 시기와 지리적 범위를 넓혀가면서, 법정에서 의학 지식의 구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나타났다. 일군의 의학사 연구자들은 이를 법의학의 역사를 범죄 판단과 일탈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라는 맥락, 즉 의료 권위의 확장이라는 의료화 맥락에서 분석했다.¹⁵ 일례로 노예의 신체에 대한 감정에서 강간 피해 판정에 이르기까지 신체와 몸에 대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적 분쟁에 대한 최근의 분석은, 법과 의학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층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법정이 어떻게 신체와 몸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장소로 작동하는가? 그 과정에서 법과 의학은 어떻게 신체의 결함과 이에 대한 상해를 판단하는 권위를 확립하게 되는가? 그 결과 나타난 몸에 대한 새로운 권력과 규율 방식은 실제 법적인 정의의 구현에 어떠한 역할을

Display in the Nineteenth-Century English Courtroom,” *Social Studies of Science* 48:6 (2018), 891-918.

¹³ Crawford, “Legalizing Medicine,” Crawford and Clark, eds., *Legal Medicine in History* (각주 3), 89-116.

¹⁴ Eigen, *Unconscious Crime* (각주 2).

¹⁵ Robert A. Nye, “Sex Difference and Male Homosexuality in French Medical Discourse, 1830-1930,”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63:1 (1989), 32-51; Cathy McClive, “The Hidden Truths of the Belly: The Uncertainties of Pregnancy in Early Modern Europe,” *Social History of Medicine* 15:2 (2002), 209-227; David G. Horn, *The Criminal Body: Lombroso and the Anatomy of Deviance* (London: Routledge, 2003); Stefan Timmermans, *Postmortem: How Medical Examiners Explain Suspicious Dea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수행했는가? 즉, 최근의 연구들은 법적 권위 구조 내에서 의학적 전문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지식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법적 정의에 대한 더 확장된 질문을 제기한다.¹⁶

2023년 출판된 역사가 데보라 블루멘탈(Debra Blumenthal)의 15세기 지중해 노예 보증 분쟁에 대한 논문은, 법의학의 제도화 이전에도 법과 의학이 상호작용을 하며 전문적인 권위를 형성했음을 밝혔다. 그녀는 당시 여성 노예들의 가치가 임신 가능성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가임기 노예들의 신체적 “결함,” 특히 월경과 임신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보증에 관한 법적 분쟁을 분석한다.¹⁷ 이 법적 분쟁은 월경과 임신 관련 결함의 정의와 진단, 그리고 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고, 의사들은 이를 계기로 산부인과적 질병을 경험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얻으며 법정에서 노예 보증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가로 동원되었다. 그 결과 노예의 숨겨진 결함을 밝히는 의학 검사가 확대되어 신체 통제가 강화되었다. 법정이 새로운 의학적 사실을 생산하는 장소로서 기능한 동시에, 취약한 계층의 신체가 의학 발전의 명목으로 대상화되고 착취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근대 형법의 정립 과정에서 의학 증거 도입과 법의학 제도화를 분석한 수전 번스(Susan Burns)의 분석은 동아시아 맥락에서 의학적 증거의 법적 의미와 함의에 관한 독보적인 연구이다.¹⁸ 번스는 1880년대 일본 형법의 정립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재판이 제도화되었으며, 예비 심리 단계에서 전문증인(감정인)의 도입을 통해 의학 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실 설치 는 근대적 형법의 정립과 법의학의 제도화가, 보다 넓은 맥락에서 과학적 진리에 기반한 정의를 구현하는 “일본의 문명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번스는 의학적 증거가 법정에 도입되면서 성범죄 입증 요건으로 “폭력 또는 강요(violence or duress)”가 명시되면서 저항 흔적이나 혈흔, 정액과 같은 증거가 없으면 기소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침묵하는 증인”이라는 물리적 징후를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법의학적 증거 중심주의가, 성범죄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으

¹⁶ Burney and Hamlin, eds., *Global Forensic Cultures* (각주 3).

¹⁷ Blumenthal, “As [Healthy] Women Should” (각주 4).

¹⁸ Burns, “Sexual Assault and the Evidential Body” (각주 4).

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간과한 채, 오히려 기소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음을 비판한다.¹⁹

20세기 후반에 들어 DNA 증거 등의 발달로 점차 확고해지는 법의학 문화(forensic culture)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무엇보다 과학과 법의 상호작용 속에서 과학적 사실과 전문가 증거가 확립되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정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다음 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제조물 및 유해 물질 관련 소송의 사회적,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 그중 대표적인 사례인 담배소송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입증과 법적 책임의 문제를 둘러싸고 의학 전문가와 과학적 증거가 법적 판단의 체계 속으로 어떻게 도입되며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3. 담배소송에서 의학감정서의 도입

1980년대 말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시민권 의식이 확대되고, 헌법 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공익소송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장애인 권리, 환경권, 소비자 안전, 유해물질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이 급증하였다. 각종 사회단체와 환경·보건 운동 단체들이 증가했으며, 변호사 수의 증가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중보건을 해치는 제조물, 유해물질 피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²⁰ 아울러 국제 보건 운동의 확산으로 국가 간 의학 및 공중보건 지식이 전파되며 흡연과 폐암, 고엽제와 질병, 간접흡연과 호흡기 질환 등에 관련된 공적 지식이 축적되었고, 미국·일본 등 해외의 제조물 책임 소송 경험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원고적격과 입증책임 완화 법리나 환경권과 같은 법적 권리도 논의되기 시작했다.²¹ 이와 동시에 1996년 유해화학

¹⁹ Ibid.

²⁰ Celeste L. Arrington, "Rights Claiming through the Courts: Changing Legal Opportunity Structures in South Korea," Celeste L. Arrington and Patricia Goedde, eds., *Rights Claiming in South Kor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151-171.

²¹ Kim and Arrington, "Knowledge Production through Legal Mobilization" (각주 5);

물질 관리법 개정을 비롯해 소비자보호법,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져 관련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²²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이르러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본격화되었다. 1999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흡연자들의 담배 제조사에 대한 소송이 대표적 출발점이다.²³ 이후 2002년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을 계기로 2007년 자동차배출가스 소송, 2010년 반도체 작업장 노동자 행정소송,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소송 등이 이어졌다.²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배금자 변호사와 시민단체는 장기 흡연 피해자 여섯 명을 선별하여 1999년 12월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였다.²⁵ 이러한 소송들은 동아시아 담배 시장 개방, 국제 보건 운동의 성장, 건강권 담론의 확산 속에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특정 제조물의 사용이나 유해화학물질의 노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확립하는 과정에 동원되는 과학적 증거가 미비하거나 서로 상충하는 증

Christopher C. Sellers and Joseph Melling, *Dangerous Trade: Histories of Industrial Hazard across a Globalizing World*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2); Roddey Reid, *Globalizing Tobacco Control: Anti-smoking Campaigns in California, France, and Japa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 Sarah Milov, *The Cigarette: A Political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김인·이두갑, “법정에서 ‘비흡연자’ 대표하기: 한·미 간접흡연 소송 비교의 쟁점과 협연권, 환경권, 그리고 중독 문제”, 『과학기술학연구』 22:1 (2022), 115-144.

²² 강태경·유진·백도명·최예용, 『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유해화학물질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²³ 박진영·이두갑,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229-262.

²⁴ 김종영·김화윤, “‘삼성백혈병’의 지식정치”, 267-318; 김주희·이두갑, “법정에 선 대기오염의 ‘화학적 인프라’: 서울 대기오염 소송(2007~2014)을 중심으로”, 『ECO』 24:2 (2020), 129-168; 박진영, “경제 너머의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 기준과 과학 자문의 정치”, 『과학기술학연구』 25:1 (2025), 1-32.

²⁵ 이 소송을 주도한 배금자 변호사는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미국 담배소송의 법리를 한국에 도입하는 논의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익소송위원회에 소속으로 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담배소송을 준비했다. Keum Ja Bae, “Applying American Tobacco Litigation Theories in Korea” (LL.M. dissertation, Harvard Law School, 1998).

거의 경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²⁶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역학 연구가 인과관계 추정의 핵심적 증거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역학적 인과성이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로 어떻게 번역될 것인지에 관한 제도적·법리적 정합성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²⁷ 이에 법적 개연성 이론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제안되었으나 실제 국내 소송에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지속적으로 쟁점화되었다.²⁸

이러한 상황에서 금연운동협의회는 20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가족력에서 폐암이 없고, 작업환경 등에서 흡연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된 폐암 환자 원고 여섯 명의 의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의 자문을 받아 의사 소견서와 신체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2000년 9월 법정에서는 흡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성에 관해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담당하고 있던 김일순에 의한 전문가 증언이 이루어졌다. 이에 맞서 피고 측은 해외 자료와 의학 교과서를 인용하여 역학의 한계를 강조하고 니코틴 의존의 특성을 금연이 가능할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의학적 불확실성을 제기하였다.²⁹

이에 2004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상반된 진술을 정리하고 인과관계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폐암 진단을 받은 여섯 명이 진료받은 병원들을 배제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하 서울의대) 조수현 교수를 중심으로 한 5인의 감정인단을 구성하여 포괄적 의학 감정을 촉탁하였다. 서울의대 법의학과 이윤성, 호흡기내과 한성구, 예방의학과 유

²⁶ 이선구, “유해물질소송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26:1 (2015), 256-285.

²⁷ Gerald W. Boston and M. Stuart Madden, *Law of Environmental and Toxic Torts: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St. Paul: West Group, 1994); Gary Edmond and David Mercer, “Litigation Life: Law-Science Knowledge Construction in (Bendectin) Mass Toxic Tort Litigation,” *Social Studies of Science* 30:2 (2000), 265-316; Tal Golan, “Epidemiology, Tort, and the Relations between Science and Law in the Twentieth-Century American Courtroom,” Mario Biagioli and Jessica Riskin, eds., *Nature Engaged: Science in Practice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168-183.

²⁸ 도재형·최지윤, “직업병 소송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최근 판결의 검토”, 『대한의사협회지』 61:8 (2018), 474-484.

²⁹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00. 9. 15. 7차 변론조서의 일부)”, 1999가합104973, 2000년 9월 15일.

근영, 신경정신과 류인근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된 감정인단은 여섯 명의 진료기록, 진단 경과, 진단명 및 치료 내용을 검토하고, 이들 중 사망한 세 명의 원고의 경우에는 가족력이나 기존 질병 여부, 작업환경, 흡연 경력 등을 고려하고, 아직 살아있는 세 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문진과 관찰, 조직 검사 등 직접 신체 감정을 수행했다.

감정인단이 2004년 11월 4일 법원에 제출한 의학감정서(이하 “감정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흡연 외 요인의 기여 가능성, 니코틴 중독성과 금연 가능성 등을 논하며, “흡연만이 폐암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³⁰ 그러나 “감정서”의 내용과 결론에 대해 크게 반발한 원고 측은 재판부에 추가 사실조화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감정보완 촉탁을 요청하여, 2006년 2월 28일 감정인단은 “사실조화 및 감정보완 촉탁에 대한 의견서”(이하 “감정보완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그 직후인 2006년 5월 8일, 원고 측 의학 근거를 제공하고 증언했던 김일순을 비롯한 13명의 예방 의학, 호흡기내과, 정신과, 암 전문가들은 재감정 소명자료, “감정서와 감정보완의 문제점”(이하 “문제점”)을 제출하며 감정서와 감정보완서가 모두 “모순되고, 비논리적이고, 비학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도록 의학 지식을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결론으로 이해하도록 유도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³¹

이처럼 “감정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자 2006년 10월 12일 원고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감정인 조수현 · 이윤성 · 류인근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 “감정인 신문조서”(이하 “신문조서”)에서 원고는 “감정서” 내부에서 나타난 인과관계의 정의 · 해석의 불일치뿐 아니라 감정인단 구성과 전문성 문제를 우선 논의했다.³² 원고 측은 감정인단의 팀장 역할을 맡은 조수현이 산업 · 환경의학 전문가로서 흡연 외 다른 발병 원인을 찾아내는 분야에 종사해 왔다는 점, 감정 과정에서 디젤 배기가스, 미세먼지, 살충제, 음식

³⁰ 조수현 · 이윤성 · 한성구 · 유근영 · 류인근, “감정서”, 1999가합10497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 2004년 11월 4일, 36.

³¹ 김일순 · 김대진 · 김대현 · 김성규 · 김철환 · 맹광호 · 박순우 · 신동천 · 서일 · 지선하 · 조홍준 · 정유석 · 이진수, “감정서와 감정보완의 문제점”, 1999가합10497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 2006년 5월 8일, 1.

³²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신문조서”, 1999가합104973, 제20차 변론조서 일부, 2006년 10월 12일, 24-25.

점 및 목재 관련 종사 등의 요인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점을 들어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조수현이 피고 측 변호사와 같은 등산모임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 서울의대가 담배 회사의 기부나 연구 지원을 금지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수백 억대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 등을 들어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³³ 이에 조수현은 자신이 예방의학회 이사장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가라 할 수 있으며, 감정인 선정 이후 피고 대리인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며, 담배 회사의 기부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서울의대가 원고들이 폐암 관련 진료를 받지 않아 보다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선정된 것이라 지적했다.³⁴

감정인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되었다. 원고 대리인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판단을 맡은 이윤성이 역학 연구 경험이 없는 법의학자이며, 니코틴 중독을 판단한 류인균이 해당 분야 연구 실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은 자신이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병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법의학 전문가임을 강조하였다. 류인균 역시 정신과 분야 내 약물 의존 영역의 전문의로서, 당시 국내에 니코틴 중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자는 거의 부재한 현실을 언급하며 반박하였다. 조수현은 또한 당시 한국에서 엄밀한 역학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 연구진에 의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힌 연구논문은 하나도 없”다고 답하며 감정인단 선정이 당시 국내 전문성 환경에서 가능한 최선이었다고 주장하였다.³⁵

법정에서 의학적 증거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여 도입된 의학감정서는 담배소송의 법의학적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법의학적 지식의 도입은 과학과 법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을 낳아왔으며, 그 결과 인과관계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의 양상을 끊임없이 재구성시켰다. 감정인단의 구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쟁은 감정 절차의 신

³³ 같은 문서, 14.

³⁴ 같은 문서, 6-15.

³⁵ 같은 문서, 7-14, 12 인용.

퇴성 문제를 넘어, 법정이 요구하는 인과 판단의 기준이 의학적 실천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되고 조정되는지를 드러내었다. 다시 말해, 감정인단 구성에 대한 논란은 법원이 기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사실상 원고와 피고 간의 경합을 통해 구성적이며 가변적인 지식 실천들 위에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긴장이 “감정서” 내 인과관계 서술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의 논의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 의학적 지식과 법적 인과관계의 간극

사법 과정의 법의학적 전환은 명확성과 의심이 동시에 제도화되는 과정을 수반하였으며, 의학적 전문성은 법적 판단의 구조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재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배소송에서 감정인단이 수행한 감정 역시 법적 책임의 구조와 의학적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담배소송의 감정인단이 전제하는 병인론적 관점과 발병 요인에 대한 분류가, 어떻게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경합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감정인의 연술을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한다. 첫째, 의학적 병인론의 인식론적·윤리적 한계가 법적 책임의 논리 속으로 전환되는 방식, 둘째, 전문가 지식이 법정 신문 과정에서 협상되고 재구성되는 양상, 셋째,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어떻게 의학 감정의 불확실성 속에서 구체화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 의학적 병인론의 인식론적 한계의 전환

감정인들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대 의학에서 암의 원인에 대한 병인론(etiology)이 지니는 특징을 서술했다. 첫째는 다요인설(multifactorial etiology)로, 인체가 가지는 생물학적 특징이 워낙 다양하며, 특히 암처럼 다양한 요인이 오랜 시간 작용하여 나타나는 질병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결과설

(multiplicity of outcome)로, 흡연이 폐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 폐기종, 방광암 등 다양한 인체 기관에서 다양한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감정인들은 따라서 의학적 관점에서는 암에 대한 일반적인 인과론의 정립을 위한 조건, 예컨대 필요-충분조건이나 상당인과관계설을 엄격하게 만족하는 질병 인과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³⁶

이어 감정인들은 의학적 인과론의 윤리적·방법론적 제약도 설명했다. 의학의 경우 피실험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연구윤리적 고려를 그 의무로 하므로 실험의 설계에 있어 지나치게 조작적이고 침해적인 개입을 할 수는 없다.³⁷ 감정인들도 질병의 “유일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이미 질병이 발생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명제를 반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명제를 채택하는 역학 연구에 의존하는 점을 인정한다. 즉 질병을 일으키는 인체 실험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당위로 인해 질병의 원인은 위험 비율(risk ratio) 혹은 상대위험도(relative risk)와 같은 통계적 지표로 인과성이 제시된다.³⁸ 즉 의학의 인과성은 근본적으로 확률적이고 잠정적이며, 이는 법정이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과 판단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담배소송의 심문 과정 초반에 의학적 병인론의 특징들은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 하에서 역학 연구의 결과가 개별 인과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전환되어 갔다. 감정인들은 감정보완서에 “장기간 흡연한 사람이 폐암에 이환되었을 때 역학 연구 결과를 그 폐암이 흡연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³⁹ 역학적 인과관계와 그것의 개별 환자 폐암에 대한 적용 여부를 주로 담당했던 병리학자이자 법의학자였던 이윤성의 이러한 답변은, 특히 명확한 신체 및 물리적 증거로 환원되는 조직 판독 및 부검으로 질병의 원인을 판단하고 인과관계 추정을 수행하는 법의학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⁴⁰ 이러한 감정인의

36 조수현·이윤성·한성구·유근영·류인균, “감정서” (각주 30), 10-12.

37 Cathy Gere, *Pain, Pleasure, and the Greater Good: From the Panopticon to the Skinner Box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38 조수현·이윤성·한성구·유근영·류인균, “감정서” (각주 30), 12.

39 조수현·이윤성·유근영·한성구·류인균,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 촉탁에 대한 의견서”, 1999가합10497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 2006년 2월 28일, 7.

40 지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50년사”, 『의사학』 5:1 (1996), 33-52.

시각은 법적 맥락에서 “침묵하는 증인”으로 간주되는 신체·조직·흔적에 대한 개별적인 증거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며, 인과관계 판단을 통계적 확률보다 물질적 흔적의 확인 가능성에 우선적으로 기반을 둔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전문가 지식의 협상: 인과 개념의 혼재

감정서 신문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지점은, 감정인단 내부에서 인과관계라는 핵심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이를 어떻게 번역하여 법적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일치였다. 우선 감정인단은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에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필요-충분조건과 같은 인과 판단의 원칙을 일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역학적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판별하는 데 있어 동원된 인과관계는 집단 수준의 확률적 연관성, 연구 방법론적 조건, 그리고 개별 환자의 발병 원인 추정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혼재되어 논의되면서, 법정이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과학적 기준이 고정된 준거점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원고와 피고에 의해 동원되고, 타협이 이루어지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우선 감정인단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별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어떻게 만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각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으며, 설명 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첫째로, 폐암의 발생이 흡연으로 일어난다는 병인론의 필요-충분조건이 법정에서 어떤 기준을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충분조건은 특정 원인이 있으면 질병에 걸리는지, 필요조건은 반대로 질병에 걸리면 그 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일컫는다. 신문 과정에서 필요조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얼마나 폐암에 걸리지 않을 안전도가 높아지느냐 하는 부분” 등으로 서술되었다.⁴⁾ 이후 지속된 질의 후에 감정인은 일관적으로 역학적 증거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충분조건마저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

4)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신문조서” (각주 32), 25-26.

기도 했다. 이윤성은 충분조건이란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린다는 조건”이라는, 형식 논리학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표현을 수궁하다가, “상당히 많은 양의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확률적 서술로 정정했다.⁴² 즉, 형식 논리학적으로 단정적인 진술이 법정 신문 과정에서는 점차 개연적이고 확률적인 언어로 후퇴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의학적 인과관계의 인식론적 불확실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양상으로 변화해 갔다.

감정인들에 대한 추가 심문에서는 또한 감정인 내에서 법적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의학적 기준이 일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감정인단은 의학적 증거가 법적 인과관계 판단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요인을 뒷받침하는 확실성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조수현은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였으며, 이윤성 또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100% “모두 충족되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지만, 둘 중 하나만 충족된 경우에는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보충하는 데에 그쳤다.⁴³ 결국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가 자연과학적으로 확정적인 입증 기준에 의해 판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학적 맥락에서는 감정인의 해석과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법정의 맥락에서는 이를 법적 판단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 해석 여지를 남기며 사법부에 해석의 책임을 맡긴 것이다.

원고 대리인과 감정인단의 신문 과정을 검토하면, 역학연구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에서도 인과관계 개념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층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원고 대리인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통상적으로 역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힐(Hill)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입증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질의하였다.⁴⁴ 이에 이윤성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⁴⁵ 조수현 역시 동일한 질문

⁴² 같은 문서, 79-80.

⁴³ 같은 문서, 79.

⁴⁴ Austin B. Hill, “The Environment and Disease: Association or Causation?”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58 (1965): 295-300.

⁴⁵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신문조서” (각주 32), 37.

에 대하여 인과관계 입증 방법을 그 중요성에 따라 “역학적 연구”, “동물실험”, “사례 보고”의 세 단계로 구분하면서, 특히 회귀암의 경우 사례 보고가 인과관계 추정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역학적 인과관계와 8가지 조건이 주된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⁴⁶ 감정인단에게 사실상 유일한 입증 방법으로 인정된 경로마저 부정된다면, 원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 수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공세적 질문들을 던졌으며, 결국 감정인단은 역학적 인과관계와 8가지 힐 조건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과 “주된 방법”이라는 입장을 오가며 의학적 인과관계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감정인들은 감정인신문의 후반부에서 이전의 입장과 다르게 최종적으로 역학적 이론을 구체적인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윤성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비록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역학 인과관계밖에 없고, 8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인정하였는데, 그것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라고 묻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하며 집단 수준의 연구 결과가 개별 사례로 전이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⁴⁷ 조수현은 감정서에 “흡연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쓴 사실에 대해 “그와 같은 결론이 역학적 결과나 이론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묻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러므로 역학적인 이론을 한 구체적인 개인에게도 결국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결국 “예, 그렇습니다”라고 시인했다.⁴⁸

이처럼 집단 연구의 개별 사례 적용 가능성을 두고 문서와 신문 과정에서 엇갈린 감정인의 발언은 사실 후술하듯 문제점 문서에서 “주된” 혹은 “가장 주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일어난 공방에서부터 예고되어 있던 것이었다. 문제점에서는 감정인들이 감정서에서 원고 C, A, F에 대해 흡연이 “가장 중요한”,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했음에도 “감정보완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⁴⁶ 같은 문서, 39-40.

⁴⁷ 같은 문서, 39.

⁴⁸ 같은 문서, 133-134.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며, 원래의 “감정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을 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⁴⁹ 원고 대리인과 감정인과의 의견 충돌 속에서, 그리고 법적 판단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의 정의가 지닌 불안정성과 이를 둘러싼 협상과 재정의의 필요성이 부상했던 것이다.

4.3. 책임 귀속을 둘러싼 법정 인과 판단의 정치적 작동

법정에서 개별 환자에게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용하는 문제의 핵심은, 개별적 특이성을 어느 수준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수의 위험 요인 중 어느 하나를 결정적 원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쟁점은 법적 판단이 요구하는 개별화와 의학적 판단이 전제하는 확률적 일반화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증거와 사실이 법률이 요구하는 법적 상당인과관계의 기준과 어떻게 접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정인단의 진술과 이를 비판하는 원고 대리인과 원고 측 의학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법정 내에서 의학적 인과 해석이 법적 인과 개념과 조응하지 못한 채 병렬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원고와 피고 대리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인과관계를 정의하고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감정인단은 무엇보다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 사례의 인과관계로 직접 환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흡연을 폐암의 “가장 주요한” 혹은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는 태도는 일관되게 거부하였다. 이윤성은 역학은 “법률적 인과관계처럼 엄격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학문으로, 이를 통해 다른 요인들을 모두 배제하고 흡연만이 유일한 원인임을 밝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것이 원래 목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⁵⁰ 감정인은 원인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그 가운데 단일 요인을 핵심적 원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다른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을 피고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인 피

49 김일순·김대진·김대현·김성규·김철환·맹광호·박순우·신동천·서일·지선하·조홍준·정유석·이진수, “감정서와 감정보완의 문제점” (각주 31), 9-12.

50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신문조서” (각주 32), 94.

고 대리인은 한국인 비흡연 남성의 폐암 발생률이 외국의 경우보다 최대 네 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열악한 직업 환경, 환경오염,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등 사실상 흡연을 제외한 다양한 위험인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이는 사실상 흡연 외 요인이 흡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기여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암시하는 질문이었다. 감정인단은 이러한 해석 가능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개별 요인의 상대적 비중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⁵¹

반면, 감정인단을 비판한 의학자들은 “장기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고, 폐암의 종류가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면 의학적으로 장기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⁵² 역학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대한 직접 실험이 윤리적으로 사물이나 동물 실험에서와 같은 확정적 수준의 과학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면, 가장 개연성이 높은 요인을 곧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⁵³ 결국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논쟁과 이견은, 의학적 인과관계 개념이 다양한 원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가 지닌 상이한 입장이 어떻게 의학 증거를 통해 법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차이로 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 인과관계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그 차이를 책임 판단에 동원하려는 양상은 개별 원고의 신체 감정 분석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감정서”는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자료를 근거로 폐암의 3~17 퍼센트가 직업적인 노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인 원고 C의 경우 흡연 외의 다른 요인의 기여위험도가 “최소 흡연의 20분의 1 내지 8분의 1 수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흡연이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90% 상당”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⁵⁴ 그러나 “문제점”에서는 직업

⁵¹ 같은 문서, 92.

⁵² 김일순·김대진·김대현·김성규·김철환·맹광호·박순우·신동천·서일·지선하·조홍준·정유석·이진수, “감정서와 감정보완의 문제점” (각주 31), 18.

⁵³ 같은 문서, 3-4.

⁵⁴ 조수현·이윤성·유근영·한성구·류인균,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 촉탁에 대한 의견서” (각주 39), 12-13.

병 발생을 위해서는 적어도 20~25년의 운수업 경력이 요구되는데 C는 8년 정도 종사한 데 그쳤다는 점, 그리고 해당 통계가 C의 실제 경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⁵⁵ 마찬가지로 “감정서”는 원고 A의 음주 습관과 직업도 폐암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문제점에서는 독주 관련 폐암의 조직 유형이 A의 폐암과 다르고, 농사와 폐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도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는 자료를 무리하게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⁵⁶

원고 F의 경우 흡연 연관성이 높은 소세포암을 앓고 있으며 30~40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흡연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원고들과 달리 음주나 스트레스 등 흡연 외 요인의 개입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정서”에서 “목재 분진 작업 종사자들에게서 폐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작업장에서의 흡연 제한 사항이 흡연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기여 위험도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목재산업 관련 직업상의 위험이 차지하는 비중과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학적 인과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⁵⁷ 이에 대해 감정인단을 비판하는 의학자들은 F가 목재 작업 중 흡연을 적게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감정인이 “입증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설로 만들어 논”하고 있고, 목재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폐암의 위험인자로 증명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들어 흡연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반박했다.⁵⁸ 이는 개별 사례에서조차 불확실성을 부각하려는 “감정서”와, 불확실성보다 높은 개연성을 토대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문제점”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결국 담배소송 의학감정서를 둘러싼 논쟁은 법관이 과학적 사실과 의학적 증거에 기대하는 객관성과 확실성의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개되었다. 감정인들은 법적 인과관계 판단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의학적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준거를 없이 의학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답변을 요구받는 위치에 놓였다. 그 결과 감정서 제출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의 질문에 직면한 감정인들은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태도 속에서

55 김일순·김대진·김대현·김성규·김철환·맹광호·박순우·신동천·서일·지선하·조홍준·정유석·이진수, “감정서와 감정보완의 문제점” (각주 31), 23-24.

56 같은 문서, 29-31.

57 같은 문서, 41-42.

58 같은 문서, 40-41.

오히려 자신들이 보유한 의학 지식의 한계와 제약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이 과정은 결국 법적 인과관계가 요구하는 의학적 증거의 확실성과 증명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공방으로 환원되었다. 핵심 쟁점은 외래 요인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서 흡연에 방점을 둘 것인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여 흡연과 폐암의 법적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인지의 선택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선택지는 의학 감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해석과 불확실성의 언술을 통해 더욱 부각되었으며, 결국 법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논쟁과 협상을 통해 어떻게 법의학적 인과관계가 재정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5. 법정의 논리와 의학적 불확실성의 공명

법원이 담배소송에서 내린 판결을 보면, 의학감정서가 법정의 절차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되어 법적 언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의학 감정의 어느 부분을 채택하고 이를 어떤 결론으로 연결할지는 인과관계 증명 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 여부에 크게 좌우되었다. 이 법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 부담을 진다’는 일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공해소송이나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의 입증 곤란을 겪는 경우 적용되어 왔다. 만일 법리의 적용을 엄격하게 할 경우 단일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암과 같은 질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는 높은 확률로 패소하게 된다.⁵⁹

이처럼 인과관계 증명 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 가능성은 의학 감정의 법적 효력을 가능하는 해석의 준거로 기능하며, 본 담배소송에서도 감정서가 판결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였다. 담배소송 1심은 제조물책임과 공해소송 모두에서 입증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⁶⁰ 대법원 역시 이러한 1심의 논리를 유지하면서, 고엽제 소송의 선례를 인용해 역학은 집단

59 실제로 기존 환경오염소송 판례에서도 공해로 인한 피해에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거부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대법원 1997년 6월 27일 선고, 1995다2692 판결 참고.

60 담배소송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1월25일 선고, 1999가합104973 판결.

적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일 뿐 개인에게 발생한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특히 비특이적 질환의 경우 단순한 위험인자 노출과 발병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⁶¹

담배소송의 사례는 법정이라는 제도적 맥락에서 의학적 지식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반으로 호출될 때 법적 전문성과 의학적 전문성이 상호작용을 하며 증거의 성격이 재구성되는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법정은 개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해 판례의 준중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안정성은 유사 사건 간 일관된 판단을 보장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신뢰 가능성을 확보하는 법체계의 핵심 이념으로 기능한다. 비록 법적 안정성이 법체계 외부에서는 법체계의 폐쇄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비칠 수는 있어도, 내부에서는 법체계의 독자성과 자기 생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⁶² 그러나 과학과 의학 지식은 점진적인 누적과 수정, 반증을 거치며 변화하는 역동적인, 그러나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맥락 하에서 법정은 과학의 임시적 결론을 제도적으로 최종적 판단으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안게 된다. 결국 의학감정서가 법적 판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의학의 잠정적 성격은 법정의 엄격한 증명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담배소송을 고엽제 판례의 틀 속으로 수렴시켜, 폐암의 다원적 원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의 한계를 법적 안정성의 명목 아래 제도적으로 봉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의학적 인과관계 개념이 대부분의 질병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되 단일 원인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면, 문제는 결국 어떤 수준의 개연성이 법정에서 요구하는 법적 인과관계와 합치하는가로 귀결된다. 법정은 상반된 진술 중 어느 하나에 제도적 권위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선례와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판례의 경로의존성을 감안했을 때 기존 입장을 벗어나려면 상당한 사유가 필요하다.⁶³ 그러나 담배소송에서는 흡연과 폐

61 담배소송 대법. 대법원 2014년 4월10일 선고, 2011다22092 판결; 고엽제 소송 대법, 대법원 2013년 7월 12일 선고, 2006다17539 판결.

62 양진수, “법적 안정성과 해석: 이른바 ‘아름다운 판결’을 예로 하여”, 『법학논총』 28:2 (2015), 123-168.

63 윤진수, “판례의 무게: 판례의 변경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 ”, 『법철학연구』 21:3

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이 의학적 불확실성의 언어에 머물렀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과학적·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고엽제 판례에서 확립된 보수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과학적 증거의 잠정성이 법정에서 법리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담배소송에서의 의학 감정을 둘러싼 논란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의학과 과학 지식의 가설적인 성격, 즉 새로운 연구나 증거에 의해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불완전성과 개방성이 법정의 보수적이고 이분법적 판단 구조에 편입되며 드러나는 긴장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동일한 사안에서 전문가들이 인과관계에 대한 상반된 증언을 내놓는다는 사실 자체가 법정에서 의학적 사실을 법적 증거로 확립하는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학 전문가가 법정에서 감정인의 지위에 위치되는 순간, 그는 개별 원고가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는지를 법적 판단의 언어로 단정해야 하는 압력에 놓인다. 이 경우 감정서의 다소 인식론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진술들은 원고와 피고의 심의와 공방을 거치면서, 그리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정의 구조 속에서, 과학적 확률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언술이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상당한 증거가 부재하다는 근거로 전환되는 압력을 받는다. 이처럼 확률적 설명과 단정적 결론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결국 소송 당사자가 공정성, 선례에 대한 존중, 책임의 귀속 등 법정에서 중시되는 규범적 가치와 논리를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하는 전략적 해석과 가치 판단이었다. 원고는 과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요 원인을 특정하는 전략을, 피고는 인과관계 특정의 불확실성 자체를 방어 논리로 삼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법리적 전개 과정을 검토할 때,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는 사법 판단이 실제로는 상당한 내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1심 법원은 제조물책임과 공해소송 모두에서 입증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흡연과 폐암 발병 간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2심 법원은 보다 진전된 입장을 취하였다. 즉, “흡연과 전혀 관계없거

나 관련성이 현저하게 낮은 폐암의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 비소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에 비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현저하게 낮으며 비흡연자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흡연보다는 환경오염 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은 원고를 제외한 여타 원고들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흡연력 및 고령 남성에서 발병한 편평세포암·소세포암이라는 특수성에 근거하여 역학 연구 성과를 통해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⁶⁴ 동일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심급에 따라 상이한 법적 해석이 제시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이 봉합된 듯 보이나, 하급심과 상급심 사이에서 나타난 해석의 불일치는 과학적 증거의 법적 전환 과정이 본질적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이는 법정이 과학적 지식을 단순히 수용하거나 수동적으로 번역하는 공간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문법에 맞추어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불안정성을 산출하는 역동적 장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긴장은 개별 재판부의 성향 차이라는 우연적 요인보다는, 의학적 언술이 본질적으로 집단적이고 확률적 진술에 머무르는 반면 법은 개별 사건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구조적 요구에 비롯된다. 따라서 담배소송에서 드러나는 법의학적 불안정성은 특정 행위자의 단독 개입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감정인·변호인·법관 등 다수의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관계적 생성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담배소송의 사례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법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모순을 보여주며, 의학적 증거의 도입은 법적 판단을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그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6. 나아가며

과학사회학자 도날드 맥켄지(Donald MacKenzie)는 직접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이들이 과학 이론의 변화 가능성을 인식하며, 과학적, 의학적 증거의 인식론적 불안정성이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어주고 보다 발전된 지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64 담배소송 2집. 서울고등법원 2011년2월15일 선고, 2007나8883 판결, 25.

반면 이러한 지식생산의 영역에서 한 발 떨어져 있고 이를 정책적이고 법적,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은 과학의 확실성에 대해 과도한 신뢰를 하고 있어, 특정한 지식을 규범적 판단의 토대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한다.⁶⁵ 의학적 지식과 증거의 불안정성에 대한 성찰을 결여한 이러한 과신은 법정이나 정책 결정의 장에서 규범적·가치적 판단의 중요성을 약화하고, 과학·의학적 지식을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본 논문은 법과 의학의 상호작용이 진화해 온 역사적 맥락과 1990년대 이후 공익소송의 확산이라는 국내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대표적인 공중 보건 소송이었던 담배소송의 의학감정서 도입과 그 법적 함의를 분석했다. 특히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적 의학 지식이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는 사법 구조 속에 위치시켰을 때 드러난 긴장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 소송은 의학감정서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동시에 의학적 전문 지식에 대한 신뢰와 의혹, 그리고 내재적 한계가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감정서가 법정에서 법적 책임의 도구가 아니라 결정적 증거를 요구하는 절차로 환원되면서, 의학적 병인론의 인식론적 특징과 한계가 법적 판단의 구조 속에서 증폭되었다. 이는 과거 법의학이 신체적·물리적 증거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성범죄의 법적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행한 사례를 환기한다.

과학이 진리를, 법이 정의를 추구한다는 통념과 달리, 두 영역의 만남은 새로운 긴장을 일으켜 왔다. 원고가 역학·병리학적 연구를 통해 흡연의 개연성을 강조하는 한편, 피고는 불확실성을 방패로 삼아 다른 원인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감정서의 진술은 인식론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정의 단정적 판단 요구 속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순히 증거의 오류율을 줄이거나 전문가 훈련을 통해 사실 인정자의 편향을 억제하는 방안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⁶⁶ 의학적·과

⁶⁵ Donald MacKenzie, "The Certainty Trough," R. Williams, W. Faulkner, and J. Fleck, eds., *Exploring Expertise*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8), 325-329.

⁶⁶ 이성기, "변화하는 형사재판 환경에서의 형사증거법의 역할과 과제: 사실 인정자의 편견

학적 증거의 법적 활용에서의 논쟁의 핵심은 숙련을 통해 교정 가능한 오류가 아니라, 방법론의 선택과 법적 번역 과정 자체에 내재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개별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역학적 한계는 의학적으로는 지식의 경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제기되지만, 법정에서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거로 작동하며 소송 당사자 간 구조적 비대칭을 고착시킨다. 이처럼 맥락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 전환의 간극은 단순히 과학계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과학적 증거가 판단의 최종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회적·제도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담배소송에서 의학감정서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본 논문의 분석은, 전문 지식이 법정의 인과관계 판단이라는 실천적 구조 속에 위치할 때 발생하는 제도적이고 인식론적 문제를 새롭게 드러낸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일부 감정인은 개별 사례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 집단 통계자료를 원용함으로써 피고에게 유리한 해석 구도를 형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학문적 맥락에서는 엄격한 동료 평가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될 자료들이, 감정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검증의 제약 없이 활용되면서 법정의 판결 논리에 불균형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법정 내에서 의학 지식 본래의 잠정성과 불확실성을 벗어나 새로운 규범적 권위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그 결과 과학이 지닌 한계는 투명하게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은폐되고, 불확실성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전환될 위험을 낳는다. 이는 의학의 학문적 성격을 왜곡할 뿐 아니라, 과학적 증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체를 잠식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한국 담배소송에서 나타난 법의학적 전환은 이후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의 전개와 1심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99년 제기된 담배소송에서 의학감정서가 도입되면서, 법의학적 불확실성은 변호인과 감정인, 법관 등 다양한 행위자의 개입과 감정서와 신문조서, 문서와

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증거법상 제언”, 『법과 정책연구』 14:4 (2014), 1933-1961; 김수영, “형사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활용”, 『한국의료법학회지』 24:2 (2016), 123-146; 윤신규,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법과학 증거의 요건과 질적 수준”, 『과학수사학회지』 16:1 (2022), 32-46.

통계자료 등이 서로 얹히며 형성된 관계적 산물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전환으로 나타난 의학적 증거와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들은 법정이라는 맥락 하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제도화·규범화되었다. 그 결과 비특이성 질환과 특이성 질환,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와 같이 의학적 정당화 가능성이 취약한 구분들이 법적 인과관계 판단에서 권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법리는 약 3,400여 명의 폐암 환자 집단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구성한 건강보험공단의 1심 판결에서도 원용되면서, 원고 패소의 한 축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의학 지식과 법의 교차 영역에서는, 과학적 한계를 성찰하며 규범적·가치적 판단을 통합하려는 시도 또한 공존해왔다. 예컨대 “부분적 정신이상” 개념의 형성과 같이, 인도주의적 판단으로 전환한 법의학적 실천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박도현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법리가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적 연구에서 도출된 상대위험도 내지 기여위험도를 토대로, 법적 인과관계를 인과 확률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⁶⁷ 이와 같이 담배소송에서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관찰된 법의학적 전환에 대한 본 논문의 논의는, 과학과 법의 관계를 재사유하고 공중보건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재통합할 것인가를 이론적·규범적 과제로 확장된다.

(투고: 2025년 11월 14일, 심사 완료: 2025년 12월 4일, 게재 확정: 2025년 12월 31일)

67 박도현,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인과관계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6:1 (2022), 32-46.

The Medico-legal Turn in Korean Tobacco Litigation: Medical Expert Reports and the Medicalization of the Judiciary, 1999-2014

Kim Yijae and Yi Doogab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situates Korean tobacco litigation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integrating medical expert testimony into the judicial process, in order to critically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medicalization of the judicial system. The paper analyzes the tobacco lawsuit filed in 1999 as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medical expert report introduced in 2004 to evaluate the causal link between smoking and lung cancer, as well as the surrounding expert controversies. It explores how these expert deliberations, while making public knowledge of tobacco's harms visible, simultaneously increased the demand for evidentiary clarity within the discursive framework of legal liability. The panel of medical experts was required to substantiate its conclusions in a detailed supplemental report, while the court, in turn, faced structural pressure to translate these expert findings into a final legal judgment. By discussing the role of medical evidence in the courtroom as revealed in the Korean tobacco litigation, this paper provides a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interaction and consensus-building process between medicine and law. It aims to offer a reflective foundation for integrating the values of public health and social responsibility into the legal discourse of liability.

Keywords: medico-legal knowledge, medical expert report, Korean tobacco litigation, causation, legal responsibility